

2009. 12. 14(월) 10:00

제163회 거창군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09. 11. 12.

나. 발 의 자 : 안철우 의원 외 1명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11. 26(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라. 의안번호 : 제2009 - 46호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도개선과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지원
 -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에 노력
 - 다른 지역 건설사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

-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 방지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에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안 제5조).
- 거창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제정 조례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